

의안번호	2200622
의 퇴 인	이종배의원
회 답 일	2024. 8. 16.
추 계 번호	24D0975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상이등급 7급 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승계할 경우, 2025~2029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승계보상금을 유공자 본인 보상금의 40%를 지급할 경우 2,731억원(연평균 546억원), 유공자 본인 보상금의 80%를 지급할 경우 5,462억원(연평균 1,092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상이등급 7급 유공자 승계보상금 월지급액 추정: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시나리오1: 40%	485	512	543	577	614	2,731	546
시나리오2: 80%	970	1,025	1,086	1,153	1,228	5,462	1,09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(보상금)	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등급과 관계없이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 지급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2조(보상금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현행법령은 상이등급 1~6급인 상이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이 승계되는데, 개정안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 유족에게 보상금이 승계되도록 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 발생
 - 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승계되지만, 승계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동법 제5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배우자, 25세 미만인 자녀, 부모 순이며, 상이유공자의 사망연령 등을 고려할 때, 25세 미만인 자녀 및 부모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상금 승계는 배우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상이유공자 승계배우자 수 추정 시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 72.1%, 배우자 사망률 8.2%를 적용
 - 개정안 부칙은 법 시행전에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법 시행전에 사망한 경우도 포함하여 추계함
- 현재 상이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상이유공자 본인의 보상금 대비 38~87% 수준으로, 추계에서는 상이등급 7급인 상이유공자의 경우, 유족에게 승계되는 보상금을 본인 보상금 대비 40%와 80% 두가지 시나리오로 추계함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

가.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 유족에게 보상금 승계

(1) 보상금 승계 대상자 수

- 개정안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 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현행 대통령령¹⁾에서 제

1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(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)

외하고 있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보상금이 승계됨에 따라 보상금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-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상이등급 7급 보상금 수급자는 38,444명으로 연평균 2.2%씩 감소

[표 2] 상이등급 7급 유공자 현황: 2019~2023년

(단위: 명, %)
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 증가율
합계	42,050	41,264	40,362	39,397	38,444	-2.2
전상군경	18,588	17,842	17,017	16,134	15,295	-4.8
공상군경	23,421	23,383	23,307	23,229	23,117	-0.3
4·19혁명 부상자 및 특별공로자	41	39	38	34	32	-6.0

자료: 국가보훈부

- 7급 상이유공자 사망자 수는 2023년말 기준 1,569명으로 연평균 3.3%씩 증가

[표 3] 상이등급 7급 유공자 사망자 수:2019~2023년

(단위: 명, %)
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 증가율
사망자 수	1,378	1,420	1,515	1,617	1,569	3.3

자료: 국가보훈부

-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 72.1%, 배우자사망률 8.1%, 2023년 기준 기사망 상이등급 7급 상이유공자의 배우자 1만 5,896명을 적용하여 배우자 수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

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”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.

[표 4] 상이등급 7급 유공자 보상금 승계 배우자 수 추정:2025~2029년

(단위: 명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
사망자 수	1,674	1,729	1,786	1,845	1,906
신규 미망인 발생인원	1,207	1,247	1,288	1,331	1,374
미망인 누계	15,706	15,681	15,699	15,758	15,85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(2) 승계보상금 단가

- 최근 5년간 상이등급 7급 유공자의 보상금 월 지급액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

[표 5] 상이등급 7급 상이유공자 보상금 월 지급액: 2019~2023년

(단위: 천원, %)

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 증가율
보상금 월지급액	453	482	496	521	568	5.8

자료: 국가보훈부

- 최근 5년간 상이등급 7급 유공자의 보상금 월지급액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향후 5년간 보상금 월지급액을 추정하고, 승계보상금 월지급액을 유공자 본인보상금의 40%와 80% 두 개의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추정하면 아래표와 같음

[표 6] 상이등급 7급 유공자 승계보상금 월지급액 추정: 2025~2029년

(단위: 천원, %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연평균 증가율
보상금	643	681	720	762	807	5.8
시나리오1: 40%	257	272	288	305	323	5.8
시나리오2: 80%	515	545	576	610	645	5.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상이등급 7급 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승계할 경우, 2025~2029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승계보상금을 유공자 본인 보상금의 40%를 지급할 경우 2,731억원(연평균 546억원), 유공자 본인 보상금의 80%를 지급할 경우 5,462억원(연평균 1,092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시나리오1: 40%	485	512	543	577	614	2,731	546
시나리오2: 80%	970	1,025	1,086	1,153	1,228	5,462	1,09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상이유공자 승계배우자 수 추정 시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 72.1%, 배우자 사망률 8.2%를 적용하고, 승계보상금은 본인보상금의 40%와 80% 두 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로,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